국가교통사고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이학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444 발의연월일: 2025. 1. 10.

발 의 자:이학영·박홍근·김교흥

박정현 · 강득구 · 한민수

박민규 • 전재수 • 김문수

김영배 의원(10인)

제안이유

항공·철도·해양 및 도로 분야의 대형 교통재난이 발생하는 경우이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대형 교통재난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전문적이고 일원화된 조사·예방 기구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가 교통안전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항공·철도·해양 및 도로 분야의 대형사고에 대해서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수행하고, 사고원인과 문제점을 명확하게 파악함으로써 향후 예방대책 등 국가 교통안전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가교통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국가교통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항공·철도·해양 및 도로 사고를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조사하고 사고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함으로써 항공·철도·해양 및 도로 사고의 예방과 안전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항공사고, 철도사고, 해양사고, 교통사고에 대한 사고조사의 적용 대상과 아울러 적용배제에 대해서도 규정하는 한편, 이 법을 국가 교통사고의 조사에 관해서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함 (안 제4조 및 제5조).
- 다. 국가교통사고의 원인규명과 예방을 위한 사고조사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교통사고조사위원회를 두 도록 함(안 제6조).
- 라. 위원회는 사고조사, 사고조사에 필요한 조사·연구, 사고조사보고 서의 작성, 국가교통사고에 대한 국민의 안전 지식 보급 등을 소관 사무로 함(안 제7조).
- 마.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 바. 위원회는 사고조사 내용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고, 사고조사에 관련된 자문을 얻기 위해 해당 분야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처를 두도록 함(안 제14조 및 제16조).
- 사. 국가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항공종사자등으로 하여금 국 가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고, 위원회는 국가

교통사고를 통보받거나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사고조사를 개시하여야 함(안 제19조 및 제21조).

- 아. 위원회는 사고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 또는 사무처 직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 대한 항공사고, 철도사고, 해양사고, 교통사고와 관련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 자. 위원회는 사고조사와 관련하여 사망자에 대한 검시, 생존한 종사자 등에 대한 의학적 검사, 항공기·철도차량·선박·차마·자동차등의 구성품 등에 대하여 검사·분석·시험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 차. 사고조사과정에서 얻은 정보 및 사고조사보고서는 관계자의 처벌, 민·형사상 책임규명을 위한 소송이나 행정처분의 증거로서 사용하 거나 인정되지 않도록 함(안 제30조).
- 카. 위원회는 사고조사 기술지원 및 교육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을 사고조사 연구·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
- 타. 위원회는 사고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고조사관을 둘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내외 관계기관의 장에게 사실의 조사 또는 관련 직원의 파견 등 사고조사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 및 제34조).
- 파. 위원회는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기관·단체의 장에게 국가교통사고와

관련된 자료·정보의 제공, 관계 물건의 보존 등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

하.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은 폐지하고,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을 삭제함(부칙 안 제2조 및 제4조). 법률 제 호

국가교통사고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교통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항공·철도 ·해양 및 도로 사고를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조사하고 사고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함으로써 항공·철도·해양 및 도로 사고의 예방과 안전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항공사고"란 「항공안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항공기사고,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경량항공기사고,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초경 량비행장치사고 및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항공기준사고를 말한다.
- 2. "철도사고"란 철도(「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철도차량 또는 열차의 운행 중에 사람의 사상이나 물자의 파손이 발생한 사고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한다.
 - 가. 열차의 충돌 또는 탈선사고
 - 나. 철도차량 또는 열차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운행을 중지시킨 사고

- 다. 철도차량 또는 열차의 운행과 관련하여 사상자 및 실종자가 발생한 사고
- 라. 철도차량 또는 열차의 운행과 관련하여 상당한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고
- 3. "해양사고"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 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사고를 말한다.
- 4. "교통사고"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고 를 말한다.
- 5. "사고조사"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사고(이하 "국가교통사고"라 한다)와 관련된 정보·자료 등의 수집·분석 및 원인규명과 해당 분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권고 등 국가교통사고의 예방을 목적으로 제6조에 따른 국가교통사고조사위원회가 수행하는 과정 및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사고조사의 원칙 등) ① 사고조사는 국가교통사고와 관련된 자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묻거나 비난의 정도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의 원인규명을 통한 재발방지를 원칙으로 한다.
 - ② 사고조사는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사법절차, 행정처분절차 또는 행정쟁송절차와 분리·수행되어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등) ① 항공사고에 대한 사고조사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대한민국 영역에서 발생한 항공사고

- 2. 대한민국 영역 밖 대한민국 관할에서 발생한 항공사고
- 3. 다른 국제민간항공기구(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체약국 영역에서 발생한 대한민국 국적의 항공사고
- 4. 국제민간항공기구 비체약국 영역에서 발생한 대한민국 국적의 항공사고
- 5. 다른 국가 영역 또는 관할 밖에서 발생한 대한민국 국적의 항공사고
- 6. 그 밖에 제13조에 따른 위원장이 사고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항공사고
- ② 철도사고에 대한 사고조사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열차의 충돌 또는 탈선사고
- 2. 철도차량 또는 열차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운행을 중지시킨 사고
- 3. 철도차량 또는 열차의 운행과 관련하여 사상자 및 실종자가 발생한 사고
- 4. 철도차량 또는 열차의 운행과 관련하여 상당한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고
- 5. 그 밖에 제13조에 따른 위원장이 사고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철도사고
- ③ 해양사고에 대한 조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만 이 법을 적용한다.
- 1. 사람이 사망한 해양사고

- 2. 선박 또는 그 밖의 관련 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는 등 피해가 매우 큰 해양사고
- 3. 기름 등의 유출로 심각한 해양오염을 일으킨 해양사고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고 외에 해양사고 조사에 대해 국제협 력이 필요한 해양사고 및 이에 준하는 해양사고
- 5. 그 밖에 제13조에 따른 위원장이 사고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해양사고
- ④ 교통사고에 대한 조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만 이 법을 적용한다.
- 1. 대형사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해규모가 발생한 교통사고
- 2. 그 밖에 제13조에 따른 위원장이 사고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교통사고
-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항공안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기 관등항공기에 대한 항공사고조사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사람이 사망 또는 행방불명된 경우
- 2. 국가기관등항공기의 수리 · 개조가 불가능하게 파손된 경우
- 3. 국가기관등항공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국가기관등항공기 에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
-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항공안전법」 제3조에 따른 항공기의 항

공사고조사에 있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⑦ 국가교통사고에 대한 조사와 관련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제민간항공조약」, 「국제해양사고조사코드」 등 관련 사고조사에 관하여 국제적으로 발효된 협약에서 채택된 표준과방식에 따라 실시한다.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국가교통사고의 조사에 관해서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국가교통사고조사위원회의 설치 등

제6조(국가교통사고조사위원회의 설치) 국가교통사고의 원인규명과 예 방을 위한 사고조사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으로 국가교통사고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위원회의 소관 사무) 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로 한다.

- 1. 사고조사
- 2. 사고조사에 필요한 조사 · 연구
- 3. 제27조에 따른 사고조사보고서의 작성ㆍ의결 및 공표
- 4. 제28조에 따른 안전권고 등
- 5. 국가교통사고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 · 관리 및 분석
- 6. 국가교통사고에 대한 국민의 안전 지식 보급
- 7. 국가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연구·개발

- 8. 국가교통사고와 관련한 피해자 및 유가족 지원
- 9.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국제협력
- 10. 사고조사 관련 연구 · 교육기관의 지정
- 11. 「국제민간항공조약」 및 같은 조약의 부속서, 「국제해양사고 조사코드」에서 정한 사항
- 12. 그 밖에 교통사고조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제8조(위원회의 독립성) ①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업무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하다.
 - ② 국무총리는 일반적인 행정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를 지휘·감독 하되, 사고조사에 대하여는 관여하지 못한다.
-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상임으로 한다.
 - ② 위원은 항공·철도·해양·도로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위원회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 1.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 2. 대학에서 항공·철도·해양·도로 또는 안전관리 분야 과목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 3.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

거나 있었던 사람

- 4. 항공·철도·해양·도로 또는 의료 분야 전문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박사학위 소지자
- 5.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을 취득하여 항공운송사업체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6. 철도시설 또는 철도운영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7. 선박조종 또는 선박운영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8. 차마 또는 자동차운영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9. 국가기관등항공기 또는 군·경찰·세관용 항공기와 관련된 항공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③ 위원 10명 중 위원장을 포함한 4명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6명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경우 국회는 위원 추천을 함에 있어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2명을 추천하고 그 외 교섭단체가 4명을 추천하다.
- ④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 정무직으로 보하고, 상임위원은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

- 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 ⑥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⑦ 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임명하여야한다. 이 경우 후임으로 임명된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 8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 1.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
 -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3.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따라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 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4. 항공·철도·해양·도로 사업에 종사하거나 위원 임명 전 3년 이 내에 종사하였던 사람
 -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으로 정한다.
 -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직에서 당연 퇴직한다.
- 제11조(위원의 신분보장) ① 위원은 임기 중 직무와 관련하여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 1.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장기간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 3.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 4.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위원회의 소관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경우
- ③ 제2항제2호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로 퇴직하게 할 수 있다.
- 제12조(위원의 겸직금지) ①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할 수 없다.
 - 1. 국회 또는 지방의회 의원의 직
 - 2. 국회 · 정부 또는 법원의 공무원의 직
 - 3. 행정기관 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개 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의 직
 - 4. 그 밖에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하는 직 또는 업무
 - ② 위원은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 제13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통할한다.
 - ②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국무총리에게 의안의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 ③ 위원장은 국회에 출석하여 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보고하거나 답변할 수 있다.
-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⑤ 국회는 위원장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 제14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의장이 된다.
 - ②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로 결정한다.
 - ③ 위원회는 사고조사 내용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의 의결은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 ④ 위원회는 사고조사에 관련된 자문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항공·철도·해양·도로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⑤ 위원회·분과위원회의 조직·운영 및 자문위원 위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 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신청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경우
- 4. 위원이 되기 전에 해당 사안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경우
- 5.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 ②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조사대상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 제16조(사무처)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두다.
 - ② 사무처에 사무처장 1명을 두되, 사무처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③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 사무를 관장하고 사무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④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 사무처 직원의 자격기준 등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사무처 직원의 신분보장 등) 사무처 직원은 형의 확정이나 징 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퇴직·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제18조(비밀누설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자문위원 또는 사무처 직원, 그 직에 있었던 자 및 위원회에 파견되거나 위원회의 위촉을 받아 위원회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외에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장 사고조사

제1절 사고접수 및 통보

제19조(국가교통사고 발생 통보) ① 국가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항공기의 기장, 「항공안전법」 제62조제5항 단서에 따른 항공기의 소유자등, 「철도안전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철도운영자등,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해양수산 관서 등 및 같은 법 제31조의2에 따른 선박소유자 또는 선박운항자, 「도로교통법」 제54조에 따른 운전자등과 그 밖의 관계인(이하 "항 공종사자등"이라 한다)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한다.

-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국가교통사고를 통보한 자의 의사에 반하여 해당 통보자의 신분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제1항에 따른 항공종사자등의 범위, 통보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통보시기, 통보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교통사고 사고접수 및 처리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 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20조(위원회의 사고 통보) 위원회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국가교통사고를 통보받거나 자체적으로 인지한 경우에는 「국제민간항공조약」 및 「국제해양사고조사코드」 등 국제조약에 따라 적절한 수단으로 관련 당사국에 지체 없이 발생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절 사고조사 실시

- 제21조(사고조사 개시 및 조사단 구성) ① 위원회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국가교통사고를 통보받거나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사고조사를 개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외국항공기 및 선박의 사고에 대한 원활한 사고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항공기 및 선박의 소속 국가 또는 지역사고조사기구(Regional Accident Inv estigation Organization)와의 합의·협의나 협정에 따라 사고조사를

- 그 국가 또는 지역사고조사기구에 위임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사고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분야 별 관계 전문가를 포함한 사고조사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④ 사고조사단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2조(정보제공) ① 위원회는 국가교통사고의 사고조사를 담당하는 국가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 제3조, 제18조 및 「개인정보 보호 법」등 관계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국가교통사고와 관련한 생존자와 유가족에게 사고조사 진행에 관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국가교통사고의 사고조사를 목적으로 국가 간 정보교환이 이루어질 경우 정보공개의 범위 또는 그 사용의 제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협력하여야 한다.
- 제23조(사고조사의 수행 등) ① 위원회는 사고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 또는 사무처 직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하게 할 수 있다.
 - 1. 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소유자, 제작자, 탑승자, 항공사고의 현장에서 구조 활동을 한 자, 그 밖의 관계인(이하 "항공사고관계인"이라 한다)에 대한 항공사고 관련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요구
 - 2. 철도사고와 관련된 철도운영 및 철도시설관리자, 종사자, 사고현

장에서 구조활동을 하는 자, 그 밖의 관계인(이하 "철도사고 관계인"이라 한다)에 대한 철도사고 관련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 요구

- 3. 해양사고와 관련된 선박운영 및 선박소유자·관리자, 사고현장에 서 구조활동을 하는 자, 그 밖의 관계인(이하 "해양사고 관계인"이라 한다)에 대한 해양사고 관련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 요구
- 4. 교통사고와 관련된 차마·자동차운영 및 소유자·관리자, 사고현 장에서 구조활동을 하는 자, 그 밖의 관계인(이하 "교통사고 관계 인"이라 한다)에 대한 해양사고 관련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 요구
- 5. 사고현장 및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출입하여 항공 기·철도·선박시설·차량·자동차 그 밖의 국가교통사고와 관련 이 있는 장부·서류 또는 물건(이하 "관계 물건"이라 한다)의 검사
- 6. 항공사고 관계인, 철도사고 관계인, 해양사고 관계인, 교통사고 관계인(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의 출석 요구 및 질문
- 7. 관계 물건의 소유자·소지자 또는 보관자에 대한 해당 물건의 보 존·제출 요구 또는 제출한 물건의 유치
- 8. 사고현장 및 사고와 관련 있는 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 ② 제1항제7호에 따른 보존의 요구를 받은 자는 해당 물건을 이동시키거나 변경·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위원회가 공공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거나 인명구조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위원회는 제1항제7호에 따라 유치한 관계 물건이 사고조사에 더

- 이상 필요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체 없이 유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관계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한다.
- 제24조(시험 및 의학적 검사) ① 위원회는 사고조사와 관련하여 사망자에 대한 검시, 생존한 종사자 등에 대한 의학적 검사, 항공기·철도차량·선박·차마·자동차 등의 구성품 등에 대하여 검사·분석·시험 등을 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검시·검사·분석·시험 등의 업무를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
- 제25조(관계인 등의 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사고조사를 종결하기 전에 해당 국가교통사고와 관련된 관계인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따라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사고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관계인 또는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26조(불이익의 금지) 이 법에 따라 위원회에 진술·증언·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을 한 사람은 이를 이유로 해고·전보·징계·부당 한 대우,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3절 사고조사에 따른 후속조치

- 제27조(사고조사보고서의 작성 등) ① 위원회는 사고조사를 종결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고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1. 개요
 - 2. 사실정보
 - 3. 원인분석
 - 4. 사고조사결과
 - 5. 제28조에 따른 안전권고 및 건의사항
 - 6. 공청회 자료 등 기초자료
 -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사고조사보고서를 공표하고 관계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③ 사고조사보고서의 작성 방법·기한 및 작성 후 공표·송부 등의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8조(안전권고 등) ① 위원회는 제32조제2항에 따른 조사 및 연구활동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사고조사 과정 중 또는 사고조사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교통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관계 기관의 장 및 국내외 조사당국·기구 등에 안전권고 또는 건의할 수 있다.
 - ② 관계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안전권고 또는 건의에

대하여 조치계획 및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안전권고에 대한 조치계획 및 결과를 통보받거나 이에 대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 ④ 안전권고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9조(사고조사의 재개) 위원회는 조사가 종결된 후에 조사결과가 변경될 만한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는 조사를 재개하여야 한다.
- 제30조(정보의 사용 및 공개제한) ① 사고조사과정에서 얻은 정보 및 사고조사보고서는 관계자의 처벌, 민·형사상 책임규명을 위한 소송 이나 행정처분의 증거로서 사용하거나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국가교통사고와 관련한 사무처 직원의 의견이나 분석은 소송이나 행정처분의 증거로 채택되지 아니한다.
 - ③ 위원회는 사고조사 과정에서 얻은 정보가 공개됨으로써 해당 또는 장래의 정확한 사고조사에 영향을 줄 수 있거나, 국가의 안전보장 및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 위원회는 외국의 국가교통사고의 조사과정에서 획득한 사고조사보고서의 초안, 그 일부분 또는 어떠한 문서도 그 국가가 공표·공개·발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사수행국의 동의 없이 이를 유포·발간·공개 또는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 ⑤ 제3항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보칙

- 제31조(사고조사 연구·교육기관 등의 지정) ① 위원회는 사고조사 기술지원 및 교육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을 사고조사 연구·교육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연구기관으로 지정받기를 원하는 기관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받고자 하는 분야에 대한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의 지정요건·지정절차 및 제3항에 따른 지정취소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2조(사고조사에 관한 연구 등) ① 위원회는 국내외 국가교통사고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분석·전파하기 위한 정보관리체제를 구축하 여 필요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사고조사 기법의 개발 및 국가교통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조사 및 연구활동을 할 수 있다.
- 제33조(사고조사관 등) ① 위원회는 사고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하기 위하여 사고조사관을 둘 수 있다.
 - ② 사고조사관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고조사를 수행한다.

- ③ 위원회는 사고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정확한 사고원인 규명을 위하여 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조사기법 등에 대한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④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외국의 사고조사기관 등이 실시하는 교육과정에 사고조사관을 파견할 수 있다.
- ⑤ 교육·훈련의 대상·내용·주기 및 교육기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4조(관계 기관 등에 지원 요청 등) ① 위원회는 사고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내외 관계 기관의 장에게 사실의 조사 또는 관련 직원의 파견, 물건의 지원 등 사고조사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때 파견기간은 사고조사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파견된 직원(이하 "파견조사관"이라 한다)은 그 관계 소속기관(이하 "파견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독립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다.
 - ③ 파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고조사의 지원을 요청받은 때에는 사고조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한다.
 - ④ 위원회는 파견조사관을 사고조사 업무에 활용하는 경우 다음 각호와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 1. 위원회에 파견된 기간에는 파견기관의 고유 업무를 면제해 주도록 파견기관의 장과 사전 협의 또는 협정을 체결할 것
- 2. 파견조사관이 파견기관의 고유 업무를 수행하지 않도록 공지하고,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사고조사에서 배제할 것
- 3. 파견조사관이 위원회와 이해관계의 충돌을 피하도록 공지하고,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사고조사에서 배제 또는 제한할 것
- 4. 파견조사관이 파견기관 고유 업무로 복귀할 때 파견기관의 장에 게 해고·전보·징계·부당한 대우,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 관련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할 것
- 제35조(관계 행정기관 등의 협조) ① 위원회는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그 밖의 관계 기관·단체의 장(이하 "관계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국가교통사고와 관련된 자료·정보의 제공, 관계 물건의 보존 등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효율적인 사고조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항공기 및 철도 부품·구성품의 검사 또는 시험 등 사고조사에 필요한 장비를 관계기관 또는 업체 등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협조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 1. 해상, 내수면, 육상 등에서 국가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위원회의 보유 능력을 초과하는 경우에 필요한 장비의 종류·보유기관·

업체·소재지·연락수단·이동소요시간·장비가용성 등(이하 "장비등"이라 한다)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지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

- 2. 제1호에 따른 장비등의 변동사항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장비등을 적정하게 활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보유기관 및 업체의 대체 지정 등을 조치할 것
- 3. 위원회 이외에서 항공기 및 철도 부품·구성품의 검사 또는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속의 사고조사관 등이 입회할 것
- ③ 위원회는 경찰·소방 등 관계 기관과 협조체계를 갖추어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고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과정에서 항공보안 관련 불법행위가 확인되거나 의심될 경우 국토교통부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위원회는 제24조에 따른 사망자 검시 및 생존자 검사 등 의학적 검사를 위하여 사고조사 경험이 있는 내과의사 등 전문의,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단체와 협조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 ⑤ 위원회는 국가교통사고 발생에 따라 위원회에 사고조사를 위한 적절한 자격을 갖춘 인력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다른 국가 또는 국내외 전문기관으로부터 신속하게 필요한 인력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 제3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자문위원, 제21조 제3항에 따른 분야별 관계 전문가, 제24조제2항에 따른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임직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 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5장 벌칙

- 제37조(사고조사방해의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위반하여 국가교통사고에 관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의 제출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 2. 제23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사고현장 및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의 출입 또는 관계 물건의 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
 - 3. 제23조제1항제7호를 위반하여 해당 물건의 보존·제출 및 유치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
 - 4. 제23조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해당 물건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 동·변경 또는 훼손한 자
- 제38조(비밀누설의 죄) 제18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9조(사고발생 통보 위반의 죄)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가교통사

고가 발생한 것을 알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항공종사자등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 또는 제39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1.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위반하여 국가교통사고와 관계가 있는 자료의 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 또는 지연시킨자
 - 2. 제23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국가교통사고와 관련이 있는 관계 물건의 검사를 기피한 자
 - 3. 제23조제1항제6호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거 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한 자
 - 4. 제23조제1항제7호를 위반하여 해당 물건의 제출 및 유치를 기피 또는 지연시킨 자
 - 5. 제23조제1항제8호를 위반하여 출입통제에 불응한 자

- 6. 제26조를 위반하여 이 법에 따라 위원회에 진술·증언·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을 한 사람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해고·전보· 징계·부당한 대우,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준 자
- 7. 제34조제4항제4호를 위반하여 파견조사관이 파견기관 고유 업무로 복귀할 때 해고·전보·징계·부당한 대우,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준 자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과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은 폐지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3을 삭제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및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 18조의3에 따른 처분, 절차와 그 밖의 행위로서 이 법에 그에 해당

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